

보도 시점 2025. 8. 26.(화) 12:00 배포 2025. 8. 26.(화) 10:00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

- 지난해 보다 신고인원(38.3%), 신고금액(45.6%) 모두 증가 -

- (신고 결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6,858명, 94.5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6조 원(45.6%) 증가하였습니다.

【 '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

(명, 조 원)

구 분	총신고	주식	예·적금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
25 신고인원 (금액)	6,858 (94.5)	1,992 (48.1)	3,197 (23.5)	2,320 (11.1)	319 (5.7)	80 (2.2)	704 (3.9)
24 신고인원 (금액)	4,957 (64.9)	1,657 (23.6)	2,767 (20.6)	1,043 (10.4)	253 (4.8)	84 (2.3)	543 (3.2)

* 채권, 보험, 기타

-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 48.1조원이 신고되어 '24년(1,657명, 23.6조원) 대비 크게 증가(335명(20.2%), 24.5조원(103.8%))하였으며, 특히 법인의 주식 신고금액이 23.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주식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가상자산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46.4조 원이 신고되었는데 '24년(41.3조 원) 대비 5.1조 원(12.3%) 증가하였습니다.
- 올해 신고 인원과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증가하였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개인신고자는 6,023명이 26.7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4,152명, 신고금액 1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871명(전년대비 45.1%)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0.3조 원(전년대비 62.8%) 증가하였으며,
- 법인신고자는 835개 법인이 67.8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805개 법인, 신고금액 48.5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30개 법인(전년대비 3.7%)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9.3조 원(전년대비 39.8%) 증가하였습니다.

□ (내용 분석) 자산별·연령대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자산별 분포는 신고인원 기준 예·적금 3,197명, 가상자산 2,320명, 주식 1,992명 순이며, 신고금액 기준 주식 48.1조원, 예·적금 23.5조원, 가상자산 11.1조원 순으로 나타납니다.
- 신고 연령대별 분포는 신고인원 비율은 ① 50대(28.2%), ② 40대(25.7%), ③ 60대 이상(24.8%) 순이며, 신고금액 비율은 ① 60대 이상(32.1%), ② 40대(25.8%), ③ 50대(2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신고금액은 ① 60대 이상(57.5억원), ② 40대(44.6억원), ③ 30대(41.1억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 '24년까지 821명에게 과태료 2,633억원 부과

- 올해 신고기한('25.6.30.) 이후에도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기한 후 신고한 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고시 '25.12.31.까지 70%, '26.6.30.까지 50%, '27.6.30.까지 30% 감경

-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국가간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이임동 (044-204-2801)
		담당자	사무관	이경한 (044-204-2822)

I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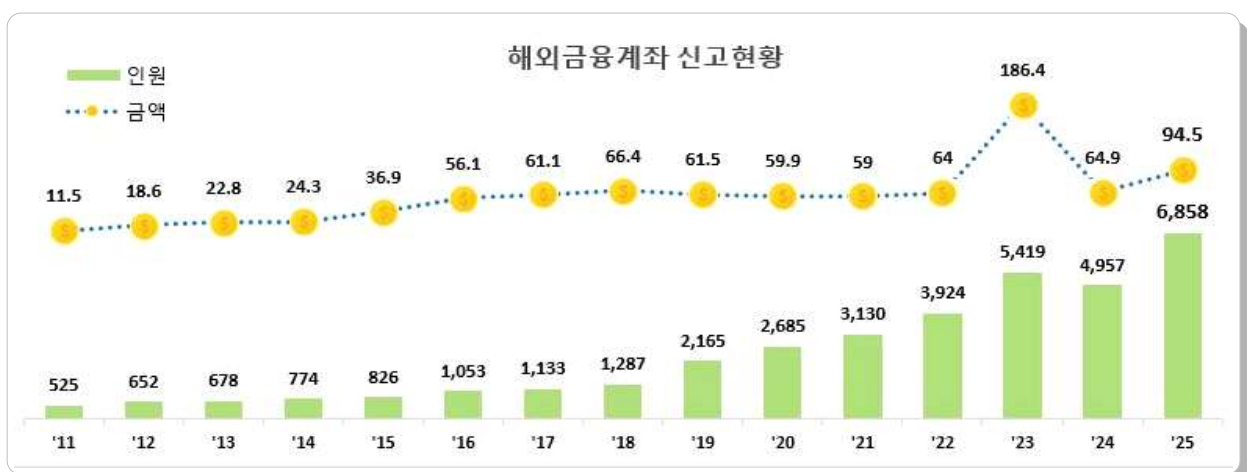
1. 결과 개요

-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6,858명, 신고금액은 94.5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4,957명, 신고금액 64.9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901명(전년대비 38.3%)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29.6조 원(전년대비 45.6%)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이 48.1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지난해 신고인원 1,657명, 신고금액 23.6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335명(전년대비 20.2%)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24.5조 원(전년대비 103.8%) 증가하였습니다.
-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보면 신고인원은 1,206%(6,333명), 신고금액은 722%(83조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 '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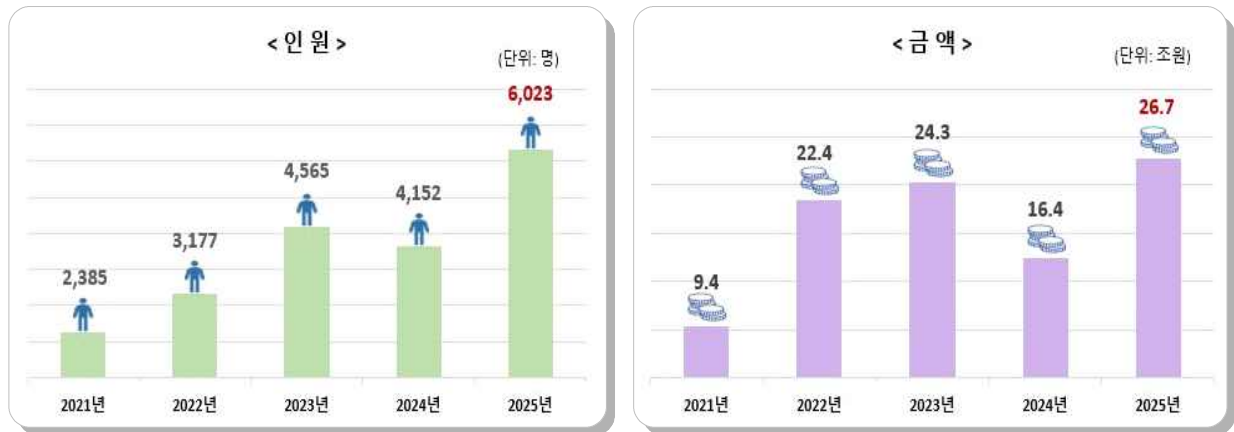
(명, 개, 조 원)

구 분	'25년			'24년		
	인원(증감율)	계좌(증감율)	금액(증감율)	인원	계좌	금액
전 체	6,858 (38.3%)	30,351 (19.4%)	94.5 (45.6%)	4,957	25,430	64.9
개인	6,023 (45.1%)	17,768 (32.2%)	26.7 (62.8%)	4,152	13,439	16.4
법인	835 (3.7%)	12,583 (4.9%)	67.8 (39.8%)	805	11,991	48.5



- 개인신고자는 6,023명이 26.7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4,152명, 신고금액 1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871명(전년대비 45.1%)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0.3조 원(전년대비 6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 최근 5년간 개인신고자 신고 추이 】



-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04.9억 원의 해외금융 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2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59배 큰 수준입니다.

【 '25년 개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원, %)

구 분	신고금액	금액 비율	인원	1인당 평균 신고금액
0~10%	18조 3,832억	68.8	603명	304.9억
10~20%	2조 5,551억	9.6	602명	42.4억
20~30%	1조 5,559억	5.8	602명	25.8억
30~40%	1조 850억	4.1	603명	18.0억
40~50%	8,153억	3.1	602명	13.5억
50~60%	6,518억	2.4	602명	10.8억
60~70%	5,389억	2.0	603명	8.9억
70~80%	4,500억	1.7	602명	7.5억
80~90%	3,750억	1.4	602명	6.2억
90~100%	3,100억	1.2	602명	5.2억
합 계	26조 7,202억	100.0	6,023명	44.4억

- 법인신고자는 835개 법인이 67.8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805개 법인, 신고금액 48.5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30개 법인(전년대비 3.7%)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9.3조 원(전년대비 39.8%)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법인신고자 신고 추이 】



-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0.9%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7,336억 원의 해외금융 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8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1,265배 큰 수준입니다.

【 '25년 법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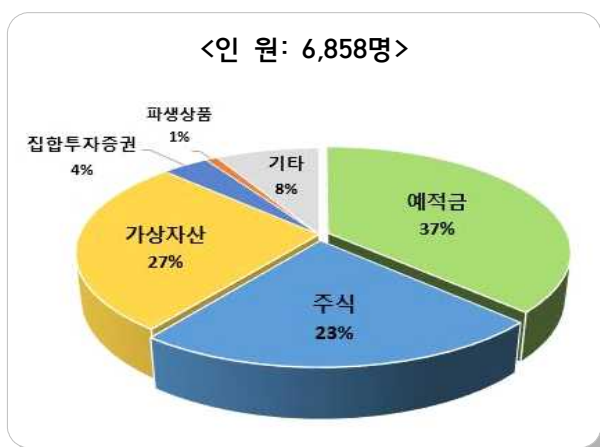
(원, %)

구 분	신고금액	금액 비율	인원	1개당 평균 신고금액
0~10%	61조 6,221억	90.9	84개	7,336억
10~20%	3조 1,880억	4.7	83개	384.1억
20~30%	1조 2,903억	1.9	84개	153.6억
30~40%	6,557억	1.0	83개	79.0억
40~50%	3,921억	0.6	84개	46.7억
50~60%	2,537억	0.4	83개	30.6억
60~70%	1,608억	0.2	84개	19.1억
70~80%	1,057억	0.2	83개	12.7억
80~90%	738억	0.1	84개	8.8억
90~100%	479억	0.1	83개	5.8억
합 계	67조 7,901억	100.0	835개	811.9억

2. 신고자산별 분석

-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총 6,858명) 기준으로 ① 예·적금(3,197명), ② 가상자산(2,320명), ③ 주식(1,992명), 신고금액(총 94.5조 원) 기준 ① 주식(48.1조 원), ② 예·적금(23.5조 원), ③ 가상자산(11.1조 원)으로 나타납니다.
-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이 총 48.1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4년(1,657명, 23.6조 원) 대비 335명, 24.5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의 주식계좌 신고인원과 법인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23년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2,320명이 총 11.1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4년(1,043명, 10.4조 원) 대비 1,277명, 0.7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상승으로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주식,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예·적금계좌 등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4.4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계좌 등 신고금액은 지난해 대비 4.5조 원 증가하였으나, 파생상품계좌 신고금액은 0.1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 '25년 신고자산별 신고현황 】



【 '24~'25년 전체 신고자의 신고자산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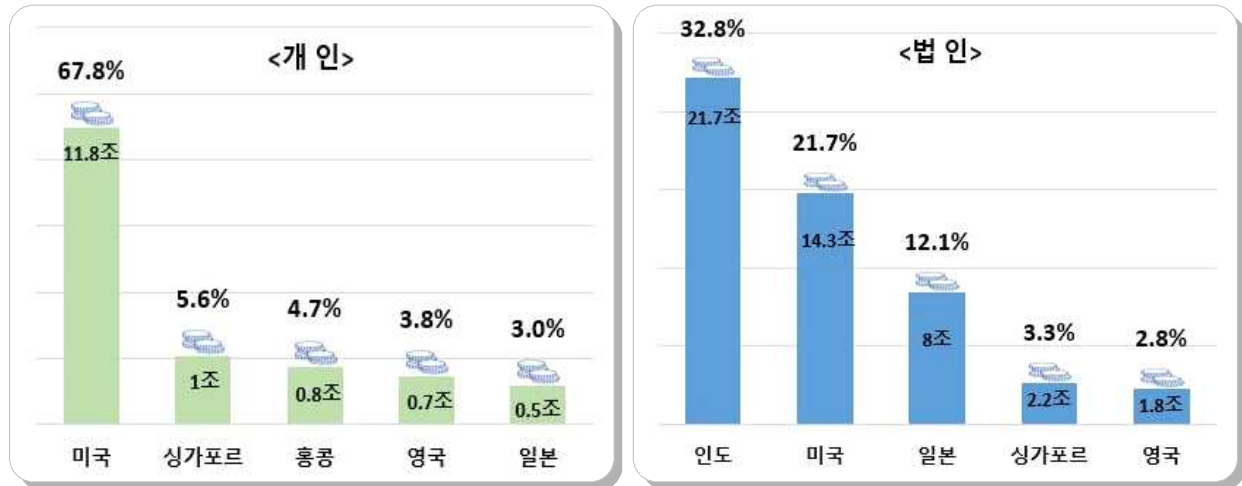
(명, 개, 조 원)

연 도	구 분		전체 (순인원)	예·적금	주식	가상 자산	집 합 투자증권	파생 상품	기타
'25	신고 인원	전체	6,858	3,197	1,992	2,320	319	80	704
		개인	6,023	2,479	1,896	2,265	299	53	648
		법인	835	718	96	55	20	27	56
	신고 금액	전체	94.5	23.5	48.1	11.1	5.7	2.2	3.9
		개인	26.7	5.9	6.9	9.3	1.5	1.2	1.9
		법인	67.8	17.5	41.3	1.8	4.1	1.0	2.1
'24	신고 인원	전체	4,957	2,767	1,657	1,043	253	84	543
		개인	4,152	2,052	1,576	996	226	60	491
		법인	805	715	81	47	27	24	52
	신고 금액	전체	64.9	20.6	23.6	10.4	4.8	2.3	3.2
		개인	16.4	3.7	5.4	3.9	1.1	1.0	1.3
		법인	48.5	16.9	18.2	6.5	3.7	1.3	1.9

3.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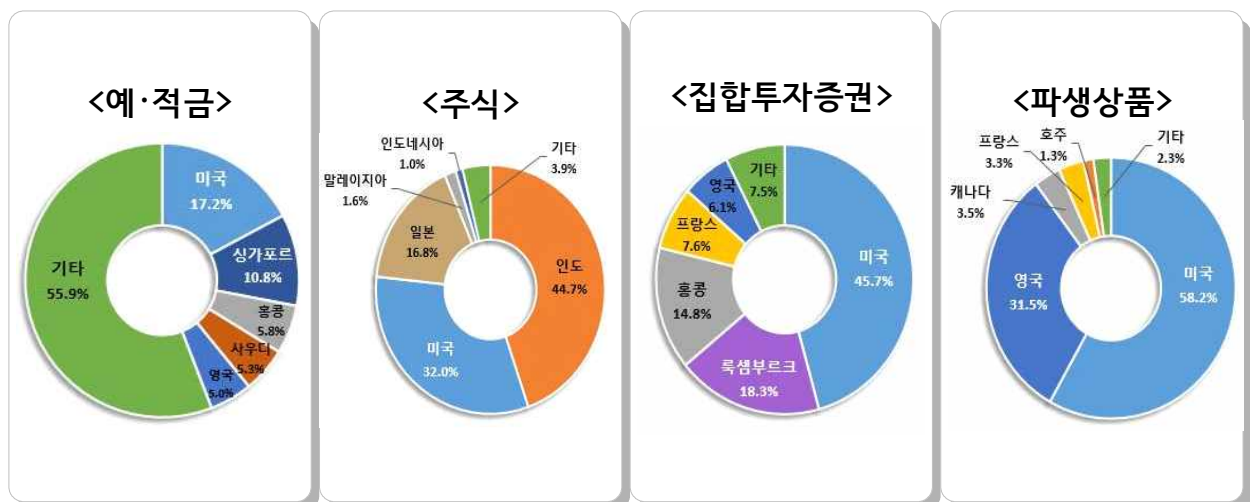
-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는 미국 계좌, 법인신고자는 인도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신고자산 보유 상위 5개국 신고금액 】



-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은 미국 계좌, 주식은 인도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신고자산별 보유 상위 5개국의 신고금액 비율 】



4. 신고내용 연령대별 분석

-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① 50대(28.2%), ② 40대(25.7%), ③ 60대 이상(24.8%) 순으로 높았습니다.
- 신고금액 비율은 ① 60대 이상(32.1%), ② 40대(25.8%), ③ 50대(2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60대 이상(57.5억 원), ② 40대(44.6억 원), ③ 30대(41.1억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 '25년 연령대별 전체 신고자 신고현황 】

(원, %)

구분	신고인원	인원 비율	신고금액	금액 비율	1인당 평균 신고금액
20대 이하	212명	3.5	8,703억	3.3	41.0억
30대	1,073명	17.8	4조 4,145억	16.5	41.1억
40대	1,549명	25.7	6조 90611억	25.8	44.6억
50대	1,697명	28.2	5조 9,516억	22.3	35.1억
60대 이상	1,492명	24.8	8조 5,781억	32.1	57.5억
합 계	6,023명	100.0	26조 7,202억	100.0	44.4억

연령대별 해외금융계좌 보유 분포도



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에 대하여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은 '24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82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633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명, 억 원)

구 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인 원	821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113	92	74	110
부과액	2,633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46	236	251	225

-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13%~20% 벌금 상당액 부과 (조세범처벌절차법 §15, 조세범처벌법 §16)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조세범처벌법 §16)

- 국세청은 '24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4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으며,
- 금년 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범칙처분·명단공개 현황 】

(명)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범칙처분	104	-	-	1	7	18	12	11	14	18	12	9	2
명단공개	9	-	1	1	2	1	1	1	-	-	-	-	2

Ⅲ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 올해 신고기한('25.6.30.)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 후·수정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

기한 후 신고한 날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25.7.1.~'25.7.31.)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25.7.1.~'25.12.31.)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5.8.1.~'25.12.31.)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6.1.1.~'26.6.30.)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6.1.1.~'26.6.3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26.7.1.~'27.6.30.)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26.7.1.~'27.6.30.)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27.7.1.~'29.7.2.)	30%

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제보 및 포상제도 안내

-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5

V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계획

-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붙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 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음

- (신고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¹⁾ 및 재외국민²⁾,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집합투자 기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1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신고대상

- (신고대상 계좌)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신고대상 자산)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 (신고대상 정보)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제재

- (과 태 료)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과태료(10억 원 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미·거짓 소명 시 10% 과태료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0④)

- (명단공개) 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등 공개

- (벌칙처분) 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붙임 2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3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9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 종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